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가단965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정우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1. 2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5. 접수 제56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714,215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600,000원 합계 3,314,215원의 미상환 카드사용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위 각 은행은 2003. 10. 24. G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G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2. D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7차732호로 ‘3,314,215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7. 2. 2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7. 3. 3. D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7458호로 ‘3,314,215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7. 2. 2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D가 2020. 8.경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585572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D의 부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 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D를 비롯한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5. 접수 제565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피고 등 H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는 이로 인해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별지